

##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개인상담 무단 불참 관리 내규

제1조(목적) 개인상담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무단 불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 참여율을 제고하고, 무단 불참 및 반복적인 일정 변경으로 인한 상담 서비스 운영 저해를 최소화하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상담 제공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학생생활상담센터 개인상담을 신청한 학생(이하 '내담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상담 일정 변경 및 취소)

1. 상담 일정 변경 또는 취소는 상담 시작 시각 최소 24시간 이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 센터 근무일 기준)까지 상담센터 또는 상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상담 시작 24시간 이내의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무단 불참의 정의 및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단 불참으로 규정한다.

1. 사전 연락 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2. 상담 시작 시각 이후에 연락하여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하는 경우

제5조(무단 불참의 관리)

1. 무단 불참 발생 시 해당 내역은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기록·관리한다.
2. 무단 불참 발생 내역은 상담 이용 제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6조(이용 제한 및 중단 기준)

1. 무단 불참이 1회 발생한 경우, '주의'와 함께 상담 일정 변경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을 재안내한다.
2. 무단 불참이 2회 발생한 경우, '경고' 조치하며 1회 추가 발생 시 해당 학기 개인상담 이용이 제한됨을 안내한다.
3. 무단 불참이 2회를 초과하여(총 3회) 발생할 경우, 해당 학기 개인상담 이용을 중단 및 제한한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학생생활상담센터 내부 회의를 거쳐 상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불가피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 ② 일정을 잡기 위해 여러 번 연락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무응답하는 등 안정적인 상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단, 내담자가 자살, 자해, 타해 위험 등 심리적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용을 보류한다.

#### 제7조(예외 인정 기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전에 연락하지 못한 경우, 사후 증빙 서류 제출이나 객관적 정황 확인을 통해 무단 불참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① 질병 또는 응급 의료적 상황
- ② 사고, 재난 등 불가항력적 상황
- ③ 예측하지 못한 학사 일정의 변경(갑작스러운 보강 등)
- ④ 직계 가족의 상 등 갑작스러운 가족 관련 중대사
- ⑤ 그 외 학생생활상담센터 내부 회의를 거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안내 및 동의)

1. 본 내규는 상담 신청 시 안내문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한다.

2. 내담자는 상담 신청 시 본 규정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절차(서명 등)를 거쳐야 하며, 동의한 자에 한하여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 제9조(시행)

본 내규는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